

의안 번호	2315	<b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4. 8. 22.(목)
- 발 의 자 : 안영호 의원 외 3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8. 22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9. 2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- 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활동 진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연구단체 구성(안 제3조)
- 연구단체 대표자(안 제4조)
- 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간(안 제5조)
- 연구단체 등록취소(안 제6조)
-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(안 제7조)
- 연구활동비 지원 등(안 제8조)
-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 및 활동 범위(안 제9조 ~ 제10조)
-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의위원회(안 제11조 ~ 제16조)
-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(안 제17조)
- 위원 수당 등(안 제 18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역과제 추진의 타당성 확보 및 연구단체 활동의 공정성, 투명성,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심의를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,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법」

**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**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**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  
의  
내부규정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